

의안번호	제 22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연철흙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7월 1일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철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3
----------	-----

발의연월일 : 2019년 7월 1일

발의자 : 연철흙, 전원표, 허창원,
송미애, 이옥규, 정상교
이숙애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 인용 조항 개정(안 제5조제1항)
 - 장애등급 → 장애정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라. 입법예고 : 관계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u>장애등급</u>,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u>장애정도</u>,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 2017. 2. 8.>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2010. 1. 18. , 2010. 5. 27. , 2015. 12. 29. , 2017. 2. 8.>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